

세무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2014년 2월 pp.127~161
한국세무학회

회계 및 세무 장부 이원화를 통한 감가상각절차 개선방안*

이만우** · 김정선*** · 심준용****

<요 약>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법인세회계 분야에도 다양한 해결과제가 등장했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은 공정가치 중심의 IFRS와 충돌이 더욱 심화됐고, 법인세 세무조정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운영도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액법만 인정되는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세무상 제약을 감안해 정률법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IFRS에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있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률법의 채택이 어려워졌다. K-GAAP과 IFRS를 모두 적용해 작성된 2010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596개의 표본 기업 중 527개, 약 88%의 기업이 IFRS를 적용함에 따라 유형자산 금액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FRS 도입 후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의 변경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확대되고, 기업의 법인세 비용 부담과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10년의 세법 개정으로도 모든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을 규명했다. 이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이 회계기준의 변동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eemm@korea.ac.kr, 02-3290-1927, 주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kjsun@korea.ac.kr, 010-2596-9838,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simjunyong@korea.ac.kr, 010-7799-9911,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3년 12월 4일

1차수정일 2014년 1월 6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5일

추가적으로 즉시상각의제 사항이 있는 경우 IFRS 도입 전부터 이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해 장부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예를 들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하면 기업이 수행할 세무조정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보다 명확하게 처리되는 점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부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감가상각, 장부 이원화, 법인세회계,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I. 서 론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로 줄여 부름)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당초 도입 초기의 혼란이 우려됐으나, 학계, 감독기관, 유관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준비를 통해 조기에 정착됐다. IFRS는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있어 공정가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에 의한 장부가액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회계 운영에 있어서 종전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으로 줄여 부름)보다 회계와 세무의 차이가 확대됐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과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산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IFRS의 도입으로 회계상 당기순손익의 법인세 과세소득과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법인의 세무조정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운용도 더욱 복잡해졌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사항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결산서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소득 계상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항목이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경영자가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할 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이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과 괴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률법을 감가상각방법으로 선택해 왔다. 그러나 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 초기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되는 정률법의 선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¹⁾ 정률법의 적용을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야 함을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도입과 함께 회계상

1) K-GAAP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2에서는 감가상각방법 중 체감잔액법의 예시로 정률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줄여 부름)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2에서는 정률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 등 허용되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²⁾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IFRS 조기적용 기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596개사의 2010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527개사(약 88%)에서 IFRS를 적용함에 따라 기존 회계기준에서의 유형자산 금액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는 IFRS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감가상각비와는 별개로 세무신고 목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신고할 수 있다. 재무회계의 장부와 세무회계의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유형자산의 실질에 맞추어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실제로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재무회계 목적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하고 있다(김상기 외 2010).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IFRS의 도입에 따라 야기될 세무회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차이 조정을 위한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재무회계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현행 회계 및 세무 장부 일원화 방식을 개선해 이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장부의 이원화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시스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이원화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IFRS를 적용한 기업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변경과 관련해 사례를 통해 기존의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상에서는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영향을 받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동시에 세무회계상으로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및 실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는 회계기준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세무조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단계적인 개선책으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국한해 회계와 세무 장부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의 변화를 공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회계와 세무 장부의 이원화가 정착된 미국의 감가상각절차와 감가상각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III 장에서 감가상각제도를 변경한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원화 방식을 적용한 경우 기존의 법인세 세무조정 시스템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V 장에서는

2) IFRS 도입 후 상당수의 기업이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함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으며, 기업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더 크게 감소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K-GAAP과 IFRS에서 감가상각방법의 차이가 없는 건물 및 구축물과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를 요약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 감가상각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 IFRS 도입의 영향에 대한 표본 조사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게 됐다.⁴⁾ 2010년 결산 시에는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으나, 2011년 결산 시 IFRS를 최초로 채택해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비교 목적으로 2010년의 결산재무제표를 IFRS를 적용해 재작성하고 2011년의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했다.⁵⁾ 그 결과, 동일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 회계기준을 모두 이용해 작성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IFRS 도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FRS 도입의 영향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GAAP과 IFRS를 적용해 작성된 재무제표의 차이를 표본조사에 의해 분석했다. 2011년에 IFRS를 최초로 채택한 12월 결산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했다. 2010년의 재무제표에서 K-GAAP과 IFRS를 적용해 작성된 정보 중 유형자산과 총자산 금액을 TS-2000을 이용해 추출했다. 유형자산의 경우 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자산을 구분하기 위해 비상각자산인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했으며, K-GAAP에서도 정액법을 적용한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했다. 두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에서 총자산의 변동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최종 표본으로 596개 기업이 추출됐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596개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패널 A에서는 2010년 재무제표를 IFRS를 적용해 재작성함에 따라 발생한 유형자산과 총자산 변동량을 분석했다. 총자산은 평균적으로 약 892억원 증가했으며, 유형자산은 평균적으로 약 228억원 증가했다. 중앙값의 경우 총자산은 약 54억원 증가했으며, 유형자산은 약 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서 나타난 IFRS 도입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유형자산의 변동 금액이 총자산 변동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결과 평균적으로 55.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391%로써 기업별로 유형자산 변동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4) 한국회계기준원이 2007년 3월 15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의하면 2009년부터 희망기업에 한해 선택적으로 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상장금융기관 포함)이 의무적으로 IFRS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07년 11월 23일 제정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통해 시행일을 명문화했다(K-IFRS 제1101호 문단 한34.1).

5)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21 비교정보

패널 B에서는 회계기준별로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변동량의 크기를 분석했다.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K-GAAP 적용 시에는 약 7.8%(4.1%)였으나, IFRS를 적용하는 경우 약 8.5%(4.9%)로 증가했다. K-GAAP 재무제표 상 총자산 대비 총자산은 약 6%(2%) 증가했고, 유형자산은 K-GAAP 재무제표 상 총자산 대비 약 1.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분석에서도 역시 최대값의 영향으로 인해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의 크기는 기업별로 유형자산 변동의 비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유형자산과 총자산의 변동과 관련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기업별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유형자산과 총자산이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표본 596개 기업 중 유형자산이 증가한 기업은 434개, 유형자산이 감소한 기업은 93개로 나타났으며, 유형자산과 총자산이 모두 증가한 기업은 343개, 유형자산과 총자산이 모두 감소한 기업은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초통계량 (표본수 : 596개 기업)

패널 A : 회계기준별 유형자산, 총자산의 크기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PPE_GAAP	190,175,578	865,804,901	0	11,528,566	10,308,630,909
PPE_IFRS	213,005,153	997,073,472	0	13,676,978	11,862,452,153
DPPE	22,829,576	308,670,341	-1,155,394,812	426,157	5,289,120,953
TA_GAAP	1,599,745,208	5,169,029,094	11,665,698	298,495,967	74,398,203,987
TA_IFRS	1,688,966,021	5,761,406,297	12,582,092	308,146,597	92,299,168,000
DTA	89,220,813	794,314,327	-610,098,860	5,477,686	17,900,964,013
DPPE / DTA	0.5530	3.9188	-11.5758	0.0115	61.7664

패널 B : 회계기준별 유형자산 비중, K-GAAP 대비 유형자산 및 총자산 변동 비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PPERATE_G	0.0780	0.1037	0.0000	0.0407	0.7987
PPERATE_I	0.0848	0.1026	0.0000	0.0492	0.7852
DPPE_RATE	0.0130	0.0473	-0.3840	0.0021	0.4422
DTA_RATE	0.0604	0.1265	-0.2034	0.0207	1.0593

PPE_GAAP : K-GAAP 적용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 금액

PPE_IFRS : IFRS 적용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 금액

DPPE : 유형자산 변동 금액으로 PPE_IFRS - PPE_GAAP

TA_GAAP : K-GAAP 적용 재무제표 상 총자산 금액

TA_IFRS : IFRS 적용 재무제표 상 총자산 금액
 DTA : 총자산 변동 금액으로 $TA_IFRS - TA_GAAP$
 PPERATE_G : K-GAAP 적용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중으로 PPE_GAAP / TA_GAAP
 PPERATE_I : IFRS 적용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중으로 PPE_IFRS / TA_IFRS
 DPPE_RATE : 유형자산 변동 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DPPE / TA_GAAP$
 DTA_RATE : K-GAAP 총자산 대비 총자산의 변동 금액 비중으로 DTA / TA_GAAP

다음의 <표 2>는 IFRS 적용으로 발생한 유형자산과 총자산의 변동량에 대해 t 검정과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했다. 검정 결과 t 검정과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IFRS 도입으로 인해 유형자산과 총자산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표 2> t검정,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표본수 : 596개 기업)

패널 A : t 검정

구 분	통계량	P-Value
DPPE	1.8056	0.715*
DTA	2.7422	0.0063***

패널 B :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구 분	통계량	P-Value
DPPE	49,508	<0.001***
DTA	49,097	<0.001***

2. 미국의 감가상각절차

미국에서는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사용된다. 미국의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인 수정가속상각법(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 MACRS)은 1987년부터 사용이 개시된 유형자산에 적용된다.⁶⁾ 감가상각비 서식 Form 4562에서 산출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서식 Form 1120(Line 20)에서 공제된다.⁷⁾ 재무회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 차이는 Schedule M-1 또는 M-3에서 장부상 소득과

6) MACRS은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 ; TRA)에 따라 종전의 가속상각법(ACRS ; 1981~1986)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ACRS(1981) 이전에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 IRC로 줄여 부름) Sec. 167에 명기된 일반적 재무회계원칙에 따른 상각방식을 사용했다.

7) 미국법인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Form 1120에 따라 총소득에서 총공제액과 순영업손실(Net

과세소득 차이 항목들 중 하나로 기입된다.⁸⁾ 즉, 과세소득 산출시 허용되지 않는 장부상의 감가상각은 조정 시 과세소득에서 가산조정 한다. 반대로 장부상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세법상 감가상각과 경비 처리된 자본비용은 조성시 과세소득에서 차감조정한다.

MACRS 적용이 가능하려면 해당 자산이 소유자산이고 사업 혹은 소득창출을 위해 사용되며 자산의 내용연수가 확정적이고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이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로 동시에 사용되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사업용도로 이용된 부분만이 상각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라도 사용 개시년도와 동일한 연도에 처분하면 감가상각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사용한 설비는 일괄 자산화 특례(Uniform Capitalization Rule)⁹⁾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의 상각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된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시켜 자본화한다. 또한 토지와 같이 수명이 영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IRC Sec. 197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은 MACRS가 아닌 감모상각(Amortization)을 적용해야 하며 필름, 비디오 테입, 녹음기 등은 소득추계방식(Income Forecast Method)¹⁰⁾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등의 자산에 대한 법정 상각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MACRS 대신 생산량비례법(Unit of Production Method)¹¹⁾을 이용할 수 있다.

MACRS는 일반상각법(General Depreciation System ; GDS)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세 가지와 대체상각법(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 ADS) 한 가지로 구성된다. GDS는 대체로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적용하고 유형자산 중 동산은 이중체감법을 사용하여 상각하므로 자산원가의 조기회수를 통해 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ADS의 상각기간은 대체로 자산의 경제적 실질인 내용연수를 반영하며 GDS의 상각기간보다 길다. ADS는 정액법을 사용하며 조기원가회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산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GDS가 적용되지만 세법조항에 명시된 자산이거나 당해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ADS를 적용한다.

Operating Loss ; NOL) 및 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과세소득 산정 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Form 4562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8) Schedule M-1은 Form 1120의 서식 중 하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명세서이다. 회계장부상 이익에서 과세소득과의 차이 항목들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순영업손실 및 특별공제 이전)으로 조정한다. 만약 회사 자산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더욱 자세한 차이 조정을 위해 Schedule M-1 대신 Schedule M-3을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서를 통해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비교해 법인세 신고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 9) IRC Sec. 263A는 세무상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직접비용과 생산 또는 재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간접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 세법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자본화한 후 추후에 감가상각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10) 비용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정비율로 곱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비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자산 순소득을 자산의 사용 개시년도 다음 10년간 기대소득의 합으로 나눈 수치이다.
- 11) 상각기간 대신 기계 운영시간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각한다(IRC Sec. 168(f)).

감가상각비는 상각기초가액(Depreciation Basis)¹²⁾에 감가상각 비율표(MACRS Percentage Table)에 명시된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적용할 상각률은 자산분류(Property Class), 상각기간(Recovery Period), 감가상각방법, 적용관례(Convention)에 따라 결정된다. MACRS가 적용되는 자산은 상각기간에 따라 분류되며 GDS의 경우 자산분류 별로 서로 다른 상각방법이 적용된다. 자산의 취득과 처분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적용관례도 감가상각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MACRS 비율표는 감가상각방법과 적용관례에 따라 분류돼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은 별도로 규정한 표에 의해 적용된다.

가. 자산 유형

자산유형은 GDS 적용자산과 ADS 적용자산으로 구분된다. GDS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투자용 유형자산은 <표 3>과 같이 상각기간(Recovery Period)에 따라 10가지로 분류된다.¹³⁾ 여기서 유형자산은 크게 동산(Personal Property ; 내용연수 3년부터 20년까지의 자산)과 부동산(Real Property ; 내용연수 25년부터 50년까지의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¹⁴⁾ 세법상 상각기간은 자산 원가에 대한 회수기간을 의미하며 대체로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다. MACRS의 기본 취지는 조기 원가회수를 통해 동산의 세후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¹⁵⁾

〈표 3〉 GDS 적용 자산의 상각기간

내용연수	자산분류	상각기간	자산종류
1년~4년 이하	3년-자산	3년	• 비운송용 견인차 • 생후 2년 이상인 경주마 • 생후 12년 이상인 비경주마 • 적격 임대용 소유자산
4년~10년 미만	5년-자산	5년	• 자동차, 택시, 버스와 트럭 •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사무용 기계(타자기, 복사기 등) • 시험 연구용 자산 • 주거용 임대부동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집기비품 • 지열, 태양열, 풍력 에너지 관련 자산

12) 뒤에 나오는 <표 7>의 계산 방법 참조

13) 자산 종류별 상각기간에 대한 분류는 IRS Publication 946의 'Table of Class Lives and Recovery Periods'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14) 토지도 부동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부동산은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25년부터 50년까지의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15) 1987년부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액법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원가회수는 사실상 동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표 3〉 GDS 적용 자산의 상각기간 (계속)

내용연수	자산분류	상각기간	자산종류
10년~16년 미만	7년-자산	7년	• 사무용 집기 비품 • 농업용 기계장치 및 설비 • 천연가스 채굴라인
16년~20년 미만	10년-자산	10년	• 비어업용 선박 • 과실수 • 스마트전력그리드시스템(2008년 10월 3일 이후 사용분)
20년~25년 미만	15년-자산	15년	• 토지개량자산(울타리, 도로, 교각 등) • 지역 폐수처리 설비 • 69킬로볼트 이상인 전력송출설비 • 천연가스 배송라인
25년 이상	20년-자산	20년	• 농업용 건물 • 69킬로볼트 미만인 전력송출비 • 25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수도설비
N.A.	25년-자산	25년	• 지역수도설비
N.A.	주거용임대자산	27.5년	• 과세소득에서 주거용 임대소득의 비중이 80% 초과하는 부동산
N.A.	비주거용부동산	35년	• 사무실 빌딩, 점포, 창고 등의 IRC Sec. 1250 자산
N.A.	철도와 터널	50년	• 철도와 터널

(자료 : IRS, Publication 946, 2012, pp.32-33)

ADS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특정자산, 외국에서 사용되는 자산, 면세자산 등이 있다. GDS에 해당되는 자산이라도 납세자가 신청에 의해 ADS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ADS로 변경하면 GDS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 ADS의 상각기간은 GDS의 상각기간보다 장기적이며 IRS Publication 946의 ‘Table of Class Lives and Recovery Periods’에 자산별로 규정돼 있다.

나. 적용관례(Convention)

적용관례는 자산의 취득과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상각기간이 3년에서 20년까지인 동산의 경우, 과세연도 중 4분기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동산)의 40%를 초과

하면 반분기 상각법(Mid-Quarter Convention ; MQ)이 적용된다. 반분기 상각법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시점이 해당 분기의 중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며, 분기별 반분기 상각법의 비율은 <표 4>와 같다. 상각기간이 3년에서 20년까지인 동산 중 반분기 상각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반년 상각법(Half-Year Convention ; HY)을 적용한다. 반년 상각법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시점이 해당 과세연도의 중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비율 0.5). 상각기간이 25년에서 50년까지인 부동산에는 반월 상각법(Mid-Month Convention ; MM)이 적용되며,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월의 중간에 취득 또는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월별에 따른 반월 상각법의 비율은 <표 5>와 같다.

<표 4> 분기별 반분기 상각법(MQ) 비율

분 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 득	0.875	0.625	0.375	0.125
매 각	0.125	0.375	0.625	0.875

<표 5> 월별 반월 상각법(MM) 비율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득	0.9583	0.8750	0.7917	0.7083	0.6250	0.5417	0.4583	0.3750	0.2917	0.2083	0.1250	0.0417
매각	0.0417	0.1250	0.2083	0.2917	0.3750	0.4583	0.5417	0.6250	0.7083	0.7917	0.8750	0.9583

(자료 : IRS, Instructions for Form 4562, 2012, p.13)

다. 감가상각 방법

GDS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200% 이중체감법, 150% 이중체감법 그리고 정액법의 3가지가 사용된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상각기간이 3년, 5년, 7년, 또는 10년인 자산은 200% 이중체감법이 적용되며 15년과 20년 자산과 농업자산은 150% 이중체감법이 적용된다. 상각기간이 25년, 27.5년, 39년, 또는 50년인 자산은 정액법이 적용된다. 이중체감법 적용 시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에 의한 상각비보다 작을 경우, 잔여 상각기간에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전환된다. ADS에 의한 감가상각에는 정액법이 사용된다.

〈표 6〉 MACRS의 감가상각 방법

구분	상각방법	자산 형태
GDS	200% 이중채감법	비농업용 3년-자산, 5년-자산, 7년-자산, 10년-자산
	150% 이중채감법	- 모든 농업용 자산(부동산 제외) - 모든 15년-자산, 20년-자산(단, 2014년 1월 전 사업 개시된 특정임차개량자산 또는 특정레스토랑 자산 제외) 200% 이중채감법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150% 이중채감법 신고자산
	정액법	25년-자산, 27.5년-자산, 39년-자산, 50년-자산 2014년 1월 전 사업 개시된 특정임차개량자산 또는 특정레스토랑 자산 - 과실수 - 이중채감법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정액법 신고 자산 - IRC Sec. 168(k)(4) 신고 자산
ADS	정액법	- 사업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예외열거자산(Listed Property) - 해외 사용 자산 2014년 1월 전 사업 개시된 특정임차개량자산 또는 특정레스토랑 자산 - 면세 자산 - 면세채권으로 조달한 자산 - 일괄 자산화 특례(Uniform Capitalization Rule) 비적용 농업용 자산 - IRC Sec. 168(g)(6) 상의 수입자산 - ADS 적용으로 신고한 자산

(자료 : IRS, Publication 946, 2012, p.40)

감가상각비는 <표 7>과 같이 상각기초가액(Depreciation Basis)에 비율표(MACRS Depreciation Table)의 상각률을 곱해 산정한다. 비율표는 각 상각방법과 적용관계별로 분류돼 있다. 상각기초가액은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사업 또는 투자용으로 사용된 자산비중을 곱한 후 즉시상각공제(Sec. 179 Deduction)와 특별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을 차감하여 계산한다(<표 7> Line 13). 상각기간 전에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산정된 연간 감가상각비에 해당 적용관계에 따른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표 7〉 MACRS 감가상각공제액 계산방법

Part I	
1. MACRS 상각방법(GDS 또는 ADS)	_____
2. 자산 분류	_____
3. 자산 사용 개시 일자	_____
4. 상각 기간	_____
5. 상각 방법과 적용관례	_____
6. 비율표의 상각률	_____
Part II	
7. 세무상 장부가액(*)	\$ _____
8. 사업/투자 용도로 사용된 자산 비중	_____ %
9. 7. × 8.	\$ _____
10. IRC Sec. 179 즉시상각공제 금액과 기타 조정사항	\$ _____
11. 10. - 9. (임시 상각기초가액)	\$ _____
12. 50%(100%) 특별감가상각 적용시 11. × 0.5(1.0) (특별상각공제액) 만약, 자산 사용 개시연도가 아니거나 적격자산이 아니거나 특별감가상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0'	\$ _____
13. 11. - 12. (상각기초가액)	\$ _____
14. 상각률 (6.과 동일)	_____ %
15. 13. × 14. (MACRS 감가상각공제액)	\$ _____

(*) 부동산인 경우 토지는 상각대상에서 제외

(자료 : IRS, Publication 946, 2012, pp.41-42)

비율표를 이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직접 계산할 경우에는 상각기초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비 공제액 누계를 차감한 상각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한다. GDS 이중체감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상각장부가액에 <표 8>에 따른 이중체감법 상각률¹⁶⁾을 곱해 계산한다. 자산 취득 사업연도에는 상각기초가액에 적용관례 비율(Convention Ratio)과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상각장부가액에 정액법 상각률(Straight Line Rate)¹⁷⁾을 곱한 금액이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상각기초가액에 '1/상각기간'과 적용관례 비율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

16) GDS의 이중체감법 상각률은 200% 이중체감법의 경우 '2/상각기간', 150% 이중체감법의 경우 '1.5/상각기간'으로 계산한다.

17) 정액법 상각률은 '1/(상각기간-경과기간)'으로 계산됨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상이하게 산정된다.
취득 사업연도 : (1/상각기간) × 적용관례 비율
취득 이후 n번째 사업연도 : 1/(상각기간-적용관례 비율-n+2)

〈표 8〉 GDS의 이중체감법 상각률

자산분류	이중체감법 종류	이중체감법 상각률
3년-자산	200%	66.667%
5년-자산	200%	40.00%
7년-자산	200%	28.571%
10년-자산	200%	20.00%
15년-자산	150%	10.00%
20년-자산	150%	7.50%

(자료 : IRS, Publication 946, 2012, p.44)

라. 즉시상각공제(Sec. 179 deduction)

IRC Sec. 179에서는 사업용으로 활용(50% 이상)되는 동산 등의 경우 사용이 시작된 과세연도의 취득비용 일부를 즉각 공제¹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업은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상각 스케줄을 관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시상각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유형자산과 설비자산, 그리고 컴퓨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다. 부동산과 투자용 자산,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자산은 즉각적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숙박시설의 제공과 관련된 자산, 에어컨디션 및 난방시설, 미국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산, 비과세단체가 사용하는 자산 등도 즉시상각공제 제외 대상이다.

2012년 기준 즉시상각공제가 가능한 금액 한도(Dollar Limit)는 \$500,000이며 취득가액 중 이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상각해야 한다. 즉시상각공제는 과세소득 범위에서 가능한데 과세소득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한 비용공제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연간 취득가액이 \$2,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한도가 초과된 금액만큼 줄어들어 \$2,500,000 이상의 자산은 즉시상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 특별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

특별감가상각은 특정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공제 적용 후에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공제 혜택이다.¹⁹⁾ 특별상각은 자산취득원가에서 즉시상각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50%²⁰⁾로 산정되며 자산 사용이 개시된 초년도에만 적용된다. 특별상각 적용 자산에는 상각기간 20년 이하의 MACRS 상

18) 상각기초가액 계산 시, 위의 <표 7> MACRS Worksheet Part II, line 10에서 취득원가로부터 차감된다.

19) 상각기초가액 계산 시, 위의 <표 7> line 12에서 취득원가로부터 추가적으로 차감된다.

20) 2010년 9월 8일 이후에 취득한 특정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100% 특별상각이 허용된다(IRC Sec. 168(k)(5)).

각자산, 수도시설 장비, 출하대기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절한 임차시설개량권(Leasehold Improvement Property) 등이 해당된다. 또한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이 시작된 자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적절한 생물연료 생산시설(Cellulosic Biofuel Plant), 재활용 시설(Reuse and Recycling Property), 그리고 재난지원 관련 자산(Disaster Assistance Property)에 대해서도 50% 특별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다.²¹⁾

바. 예외열거자산(Listed Property)

승용차 등 예외열거자산으로 지정된 자산²²⁾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비를 Form 4562의 Part V에서 별도로 계산한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예외열거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제도와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용도 비율이 50% 이하일 때는 즉시상각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으며 ADS 상각기간에 따른 정액법을 사용해 상각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IRS Publication 946(p.62)의 표에 명기된 연간 상각 한도에 따라 감가상각공제가 제한된다.²³⁾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제도와 관련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개별 기업에서 재무회계 목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세무신고 목적으로는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적인 세무처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 선행 연구 검토

가. IFRS 도입과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 43조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²⁴⁾ 이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무조정시스템

21) ADS 의무 적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의 사용이 시작된 시기와 처분이 이루어진 시기가 동일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사업용자산에서 개인용도 자산으로 용도가 전환된 경우에도 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2) 승용차 외에 다른 적격 운송용 자산, 접대용도(Entertainment) 자산, 컴퓨터와 관련 주변기기 등도 예외열거자산에 해당된다.

23) 트럭, 승합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높은 연간 상각 한도가 적용된다.

24)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

이 상당 부분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실증적으로도 Atwood et al.(2010)이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국가별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33개의 국가 중 4번째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자은(2013)은 자료의 기간을 1991년부터 2010년까지로 확장하여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총 34개의 국가 중 우리나라가 9번째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으며, 질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일치도가 기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K-GAAP을 적용하던 2010년까지와는 달리 2011년부터 IFRS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서 회계기준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영한(2007)은 IFRS 도입 후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장법인에만 IFRS의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기준 차등 적용으로 인한 법인 간 과세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영한·최원석(2009)은 금융업 중 은행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세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IFRS 도입이 은행업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손충당금, 자산·부채의 분류기준 변동, 외화환산, 금융자산의 양도와 자산유동화, 고객중심제도(마일리지, 포인트제도) 및 이연대출 부대손익의 인식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산정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우(2013)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 하에서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의 차이가 누적되는데, 특히 IFRS 도입 이후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 세무조정만으로 그 차이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IFRS 도입과 관련해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분석한 해외연구로 Chan et al.(2013)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FRS를 도입할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증가함으로써 이익 조정을 통해 기업회계상 이익을 증가시키는 반면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은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

2010년에는 IFRS 전면 도입을 앞두고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심태섭(2011)은 감가상각 및 대손충당금의 경우 IFRS 관련 규정의 개정을 미리 예상하고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임시방편적 조치가 충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나, 채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과

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세소득 이연 관련 사항 등은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회계기준의 변동을 세법 개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현재의 결산조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조정제도만을 운영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분리하여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결산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문철·이준규(2008)는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해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산조정제도로 인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과소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IFRS의 준수를 위해 세무상 손금산입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재환·정도진(2009)은 현행 법인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IFRS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칠 영향을 실제의 사례를 이용해 분석했다.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IFRS 적용 시 경제적 내용연수의 증가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계기준에 의존적인 현행 과세시스템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현재의 결산조정제도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심태섭 외(2012)는 IFRS 도입과 관련해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을 단기, 중·장기 및 장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단기적 분리방안으로 현행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가려내 이들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중·장기 분리방안으로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큰 일부 주요항목에 대해 양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장기적 분리방안으로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장부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고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부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에 대한 선행연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용 배분을 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세무회계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항목으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크게 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상각방법과 내

용연수는 경영자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다. IFRS 도입 이전의 선행연구는 경영자가 다양한 유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김기영·박희우(2007)는 기중에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을 각각 분석하면서 취득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기준을 이용해 계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상기 외(2010)는 감가상각방법의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취득 초기에 세무상 손금산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정률법을 감가상각방법으로 선택한 경영자는 감가상각 후기에 기업회계상 이익을 늘리는 이익 조정 행태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유형자산의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감가상각 후기에 기업회계상 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해 경영자가 적절한 투자를 수행했음을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화득·박선희(2012)는 경영자가 내·외부이해관계자들에 의존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이해관계자들의 압목적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상 이익이 유연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의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한다고 보고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회계의 측면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분석했으나, 최근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세무회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진영·이중현(2010)은 IFRS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무조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감가상각 제도를 비교하고 세법개정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현행 결산조정제도와 별개로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최보람·최기호(2011)는 IFRS를 적용한 기업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사례와 2010년의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IFRS 이전에는 기업들이 세법상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 것과 달리 내용연수의 결정이 경영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며, 2010년 개정된 세법의 감가상각특례조항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IFRS 도입 후 유형자산 감가상각 절차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절차의 변경은 기업회계 뿐 아니라 세무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영향을 포함해 분석함으로써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 하에서 기업의 부담을 보여 주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부 이원화의 당위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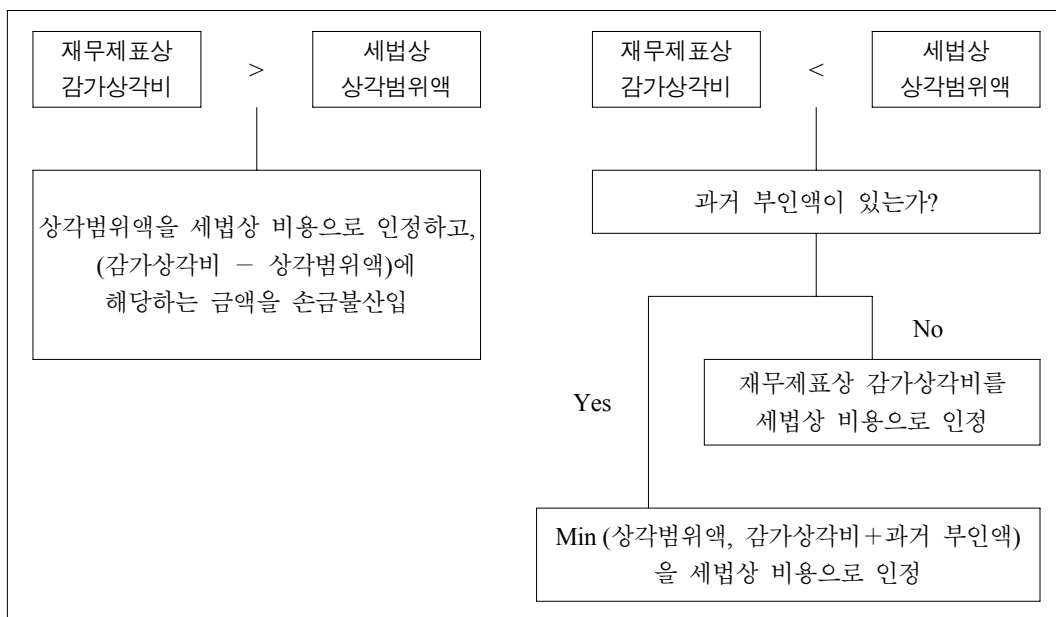
Ⅲ.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동

1. 우리나라의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우리나라의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기업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이 허용하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며,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고 과거의 부인액이 없으면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를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지만 과거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에 시인부족액 이내의 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를 먼저 확정해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와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기록이 계속 유지돼야 차기 이후의 세법상 감가상각 손금인정 범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 기록이 매우 복잡하다(이만우 2013).

〈그림 1〉 우리나라의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한편 2011년 회계연도부터 IFRS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은 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 IFRS 적용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 구성 항목 중 하나는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이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와 법인세비용 역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유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법과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기업이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IFRS 도입 전에는 일반적으로 두 감가상각비를 일치시키기 위해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무회계 목적으로도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IFRS 도입 후 상당수의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법과의 차이가 발생했고, IFRS 전환일의 재무상태표와 비교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함에 따라서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IFRS 도입으로 발생한 기업회계상 세무회계상 일련의 변화를 다음의 <사례 1>에 대한 단계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IFRS 도입 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1. 회사 A는 2009년 1월 1일 취득원가 10억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를 취득.
2. 회사 A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했으며, 정률법을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신고했음.
3.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하면서 A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세무상으로도 정액법으로 변경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5)
4. 회사 A는 IFRS를 적용하면서 비교 목적의 2010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했음.

2.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의 변동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하며²⁵⁾, 세무상으로도 상각범위액을 전진적으로 계산하므로²⁶⁾, 원칙적으로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던 기업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IFRS를 소급적용하는

25)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6

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것이 원칙이고²⁷⁾, 이에 대한 일부 면제 규정으로 간주원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²⁸⁾ <사례 1>처럼 2011년에 IFRS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비교 목적의 2010년 재무제표를 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함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효과가 소급 적용됐고,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다음의 <표 9>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비교 목적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K-GAAP과 IFRS의 차이를 비교한다.

〈표 9〉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발생하는 K-GAAP과 IFRS의 차이

(1) 연도별 감가상각비 ²⁹⁾			
연 도	IFRS (정액법) (A)	K-GAAP (정률법) (B)	감가상각비 증가 금액 (A-B)
2009	200,000,000	451,000,000	Δ251,000,000
2010	200,000,000	247,599,000	Δ47,599,000
2011	200,000,000	135,931,851	64,068,149
2012	200,000,000	74,626,586	125,373,414
2013	200,000,000	90,842,563	109,157,437
합계	1,000,000,000	1,000,000,000	0
(2) 연도별 감가상각누계액			
연 도	IFRS (정액법) (A)	K-GAAP (정률법) (B)	감가상각누계액 증가 금액 (A-B)
2010	400,000,000	698,599,000	Δ298,599,000
2011	600,000,000	834,530,851	Δ234,530,851
2012	800,000,000	909,157,437	Δ109,157,437
2013	1,000,000,000	1,000,000,000	0
(3) 연도별 유형자산 장부가액			
연 도	IFRS (정액법) (A)	K-GAAP (정률법) (B)	장부가액 증가 금액 (A-B)
2010	600,000,000	301,401,000	298,599,000
2011	400,000,000	165,469,149	234,530,851
2012	200,000,000	90,842,563	109,157,437
2013	0	0	0

27)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4A

28)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부록D 문단 D5

29) 5년 정률법 상각률은 0.451, 5년 정액법 상각률은 0.2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K-GAAP에 비해 IFRS 적용 시 연도별 감가상각누계액이 낮게 나타나고,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 분석 결과는 앞서 2010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K-GAAP 유형자산 금액과 IFRS 유형자산 금액을 비교한 <표 1>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사례 1>에서는 2009년 초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10년 재무제표 상에서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298,599,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장하여 2010년 초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증가는 251,000,000원이 되는 반면, 2008년 초에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증가는 234,530,851원이 된다.³⁰⁾ 즉,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에 따라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장부가액의 변동이 달라진다.

3. 특별 조항이 없는 경우 세무회계와 법인세 회계의 변동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세무조정 시스템에서는 재무회계상의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무회계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때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세무회계에서도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 적용 시에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효과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사례 1>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은 <사례 1>에 대해 IFRS 적용 후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와 관련한 세무조정 내역과 법인세 회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회계기준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정률법을 적용함에 따라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일시적차이가 IFRS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비교 목적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장부가액 증가액 298,599,000원은 익금불산입 후 Δ유보로 처리를 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익금산입 후 기타로 처리를 한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 139,719,800원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로 처리된다. 반면, 2014년부터 2015년에는 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발생하는 시인부족액 60,280,200원을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며, 기계장치를 처분하기 전까지 유보잔액 120,560,400원은 추인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표 10>의 분석에 의하면 회사 A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과세 소득이 139,719,800원 증가하면서 법인세 비용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처분 전까지 시인부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세무조정과 관련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는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의 부담까지 발생한다.

30) 2010년 신규 취득 시 : $800,000,000 - 549,000,000 = 251,000,000$

2008년 신규 취득 시 : $200,934,000 - 165,469,149 = 35,464,851$

〈표 10〉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

(1)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회계상 상각범위액			
연 도	IFRS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1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Δ)
2009	200,000,000	451,000,000	Δ251,000,000
2010	200,000,000	247,599,000	Δ47,599,000
상각누계액	400,000,000	698,599,000	Δ298,599,000
장부가액	600,000,000	301,401,000	Δ298,599,000
2011	200,000,000	60,280,200	139,719,800
2012	200,000,000	60,280,200	139,719,800
2013	200,000,000	60,280,200	139,719,800
2014	0	60,280,200	Δ60,280,200
2015	0	60,280,200	Δ60,280,20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1에 의하여 법인세법 상각범위액 계산

(2) 세무조정

① 2009년과 2010년에는 세무조정이 없음.

② IFRS 적용 후

－ 2011년 세무조정(2010년 재무제표 소급 적용으로 발생한 장부금액 변동)

(익금산입)	이익잉여금(감가상각누계액)	298,599,000	기타
(익금불산입)	장부가액 증가	Δ298,599,000	Δ유보

－ 2011년~2013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39,719,800	유보
---------	---------	-------------	----

(3) 법인세 회계

① 2009년과 2010년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② IFRS 적용 후³¹⁾

－ 2011년 법인세 회계(2010년 재무제표 소급 적용으로 발생한 장부금액 변동)

(차) 이익잉여금	65,691,780	(대) 이연법인세부채	65,691,780
-----------	------------	-------------	------------

－ 2011년~2012년 법인세 회계

(차) 이연법인세부채	30,738,356	(대) 법인세비용	30,738,356
-------------	------------	-----------	------------

－ 2013년 법인세 회계

(차) 이연법인세부채	4,215,068	(대) 법인세비용	30,738,356
(차) 이연법인세자산	26,523,288		

31) 사례의 법인세율은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22%(법인세 20%+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2%)를 적용하였다.
 $298,599,000 \times 22\% = 65,691,780$

<표 10>의 분석 결과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 상에서 회계기준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4.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의 특별조항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상기의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중 법인세법 제23조를 개정했으며³²⁾,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심태섭(2011)은 IFRS 도입에 따른 2010년 세법 개정 내용 중 감가상각의 경우 IFRS 관련 규정의 개정을 미리 예상하고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임시방편적 조치가 충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의 <표 11>에서 <사례 1>의 회사 A의 경우를 분석한다.

<표 11>의 분석은 개정된 세법에서 종전감가상각비를 이용해 <표 10>에서 상각부인된 금액 중 일부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했을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세무조정 내역에서 2011년~2013년 모든 기간에 걸쳐 <표 10>에 비해 손금불산입 금액이 낮게 나타나며, 재무회계상 상각만료 시점에 유보잔액이 모두 상계되므로 회사 A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이 특례 조항이 없는 경우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A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비용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의 부담도 여전히 남아 있다.

$$139,719,800 \times 22\% = 30,738,356$$

$$60,280,200 \times 22\% = 13,261,644$$

3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표 11〉 법인세 부담의 증가를 보완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적용

(1) 종전감가상각비 적용 시 일시적 차이				
연도	IFRS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종전감가상각비 적용 한도*1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Δ)
2011	200,000,000	60,280,200	135,931,851	64,068,149
2012	200,000,000	60,280,200	74,626,586	125,373,414
2013	200,000,000	60,280,200	90,842,563	109,157,43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1 나에 의해 종전감가상각비 적용시의 한도 금액 계산

(2) 세무조정*2

— 2011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64,068,149	유보
— 2012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25,373,414	유보
— 2013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09,157,437	유보

*2 상각부인액에 대해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표 10>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합산하여 표시했음.

2011년~2013년의 세무조정 결과 손금불산입 금액이 <표 10>보다 낮으므로, 동 기간 동안 법인세비용의 부담이 <표 10>보다 낮다.

(3) 법인세 회계

— 2011년 법인세 회계				
(차) 이익잉여금	65,691,780	(대) 이연법인세부채	65,691,780	
(차) 이연법인세부채	14,094,993	(대) 법인세비용	14,094,993	
— 2012년 법인세 회계				
(차) 이연법인세부채	27,582,151	(대) 법인세비용	27,582,151	
— 2013년 법인세 회계				
(차) 이연법인세부채	24,014,636	(대) 법인세비용	24,014,636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IFRS 도입 후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무조정 부담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업회계상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인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항목의 계산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결산조정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회계기준의 변동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세무조정 제도와 결산조정제도가 회계기준의 변경에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추가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장에서 다루지 않은 즉시상각의제 문제를 다루고 장부 이원화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IV. 장부 이원화 도입에 대한 고찰

제Ⅲ장에서 사례를 통해 회계기준의 변동으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분석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선 <사례 1>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즉시상각의제를 포함한 <사례 2>를 통해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의 단점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즉시상각의제는 기업이 기중에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에 해당 비용을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규에 의해 기업이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로 간주되는 경우 시부인 계산시의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는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세무상 취득가액에도 포함한다. 따라서, 즉시상각의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기업의 장부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이는 정액법과 정률법의 상각범위액을 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반면,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결과, 정액법은 기업회계상 취득가액과 세무회계상 즉시상각의제 금액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정률법은 기업회계상 기말장부가액을 기초장부가액으로 환원하고 즉시상각의제 금액과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장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단의 <사례 2>에서는 즉시상각의제를 고려했을 때, 회계기준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변동을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할 경우 적용할 방법과 기존 세무조정 시스템과의 조율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사항

박재환·정도진(2009)은 IFRS를 도입 후 적용될 유형자산 재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액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상태표

의 자본에 가산되고, 증가하는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과정을 통해 손금불산입되므로 현행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이 감소하거나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소하는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의 차이에서 오는 시인부족액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의 법인세법 개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8항을 신설함으로써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시부인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³³⁾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즉시상각의제는 언급한 손상차손 외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도 포함을 한다.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 하에서는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유보 금액에 대한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다음의 <사례 2>를 통해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사례 2>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 회사 A는 2009년 1월 1일 취득원가 10억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를 취득.
2. 회사 A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했으며, 정률법을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신고했음.
3. 회사 A는 2010년 1월 2일 기계장치에 대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1억원을 지출했으나, 이를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계상했음.
4.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하면서 A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세무상으로도 정액법으로 변경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5).
5. 회사 A는 IFRS를 적용하면서 비교 목적의 2010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했음.
6. 201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 1억원을 인식했음.

3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 8항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표 12〉 〈사례 2〉 분석

(1) K-GAAP 적용 시기				
① 연도별 시부인 계산				
연 도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 (A)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B)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Δ) (A - B)
2009	451,000,000	451,000,000	451,000,000	0
2010	247,599,000	347,599,000	292,699,000	54,900,000
② 세무조정				
- 2009년에는 세무조정이 없음.				
- 2010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54,900,000 유보				
③ 법인세 회계				
- 2009년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2010년 법인세 회계				
(차) 이연법인세자산 12,078,000 (대) 법인세비용 12,078,000				
(2) IFRS 도입 이후				
① 2010년 장부가액 변동				
연도	재무회계상 장부가액 (A)	세무회계상 장부가액 (B)	부인누계액	장부가액 차이 (A-B)
2010	600,000,000	356,301,000	54,900,000	243,699,000
- 장부가액 변동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익잉여금(감가상각누계액) 243,699,000 기타				
(익금불산입) 장부가액 증가 Δ243,699,000 Δ유보				
(익금불산입) 장부가액 증가(부인누계액 추인) Δ54,900,000 Δ유보				
② 연도별 시부인 계산				
연 도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비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 (A)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2 (B)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Δ) (A-B)
2011	200,000,000	200,000,000	160,691,751	39,308,249
2012	150,000,000*1	250,000,000	88,219,771	161,780,229
2013	150,000,000*1	150,000,000	71,260,200	78,739,800
2014	0	0	71,260,200	—
2015	0	0	71,260,200	—

*1 $(400,000,000 - 100,000,000) / 2 = 150,000,000$

*2 Max (정액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 종전감가상각비 적용 한도)

2011년 : Max (71,260,200, 160,691,751) = 160,691,751

2012년 : Max (71,260,200, 88,219,771) = 88,219,771

2013년 : Max (71,260,200, 48,432,655) = 71,260,200

2014년 : Max (71,260,200, 26,589,527) = 71,260,200

2015년 : Max (71,260,200, 32,367,296) = 71,260,200

③ 세무조정

— 2011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39,308,249	유보
— 2012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61,780,229	유보
— 2013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78,739,800	유보
— 2013년말 유보잔액 :			
		$(243,699,000) + 39,308,249 + 161,780,229 + 78,739,800 = 36,129,278$	

④ 법인세 회계

— 2011년 법인세 회계			
(차) 이익잉여금	53,613,780	(대) 이연법인세부채	53,613,780
(차) 이연법인세부채	8,647,815	(대) 법인세비용	8,647,815
— 2012년 법인세 회계			
(차) 이연법인세부채	35,591,650	(대) 법인세비용	35,591,650
— 2013년 법인세 회계			
(차) 법인세비용	17,322,756	(대) 이연법인세부채	17,322,756

<표 12>는 <사례 2>에 대해 IFRS 도입 전후에 발생하는 세무조정과 법인세회계를 분석한 결과다. 즉시상각의제로 인해 IFRS 도입 전에도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 중 54,900,000원이 손금불산입되며, 관련해 12,078,000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는 법인세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성의 검토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 A가 받는 불이익은 즉시상각의제 문제가 있는 경우 증가한다.

IFRS를 도입한 후에 대한 분석에서 역시 즉시상각의제 문제로 인해 회사 A는 <표 11>과 다르게 종전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더라도 채무회계상 감가상각 완료 시점에 유보잔액 36,129,278원이 남는다. 유보잔액은 기계장치의 처분 전에는 추인될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불이익이 증가한다.

<표 12>의 분석 결과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신고조정의 특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산조정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시스템에서는 회계기준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 장부이원화 제도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업회계상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에서 출발하여 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의 차이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반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제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분리돼 있어, Form 4562에서 산출한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서식 Form 1120의 손금으로 기입하고, Schedule M-1 또는 M-3에서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와의 차이를 표시한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회계기준의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에만 장부 이원화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양식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사례 2>를 이용해 장부 이원화를 도입한 경우를 분석한다.

〈표 13〉 감가상각비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부 이원화

- 2011년에 IFRS를 도입해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이 변하더라도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 없음.			
(1) 연도별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및 세법상 상각범위액			
연 도	기업회계 (A)	법인세법 (B)	차이 (A-B)
2009	451,000,000	451,000,000	0
2010	247,599,000	292,699,000	Δ45,100,000
2011 ^{*1}	Δ98,599,000	160,691,751	Δ259,290,751
2012	150,000,000	88,219,771	61,780,229
2013	150,000,000	107,389,478	42,610,522
합 계	900,000,000	1,100,000,000	Δ200,000,000
*1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감가상각누계액	298,599,000	(대) 이익잉여금	298,599,000
(차) 감가상각비	2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2) 세무조정			
- 과세소득 계산 구조에서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 과세소득 계산 구조에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전액 손금산입			
- 즉시상각의제는 발생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			
- 20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451,000,000	유보
(손금산입)	세법상 감가상각비	451,000,000	Δ유보

- 2010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247,599,000	유보
(손금산입)	세법상 감가상각비	292,699,000	Δ유보
(손금불산입)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	100,000,000	유보
- 2011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Δ98,599,000	유보
(손금산입)	세법상 감가상각비	160,691,751	Δ유보
- 2012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150,000,000	유보
(손금산입)	세법상 감가상각비	88,219,771	Δ유보
(손금불산입)	손상차손	100,000,000	유보
- 2013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150,000,000	유보
(손금산입)	세법상 감가상각비	107,389,478	Δ유보

(3) 연도별 기업회계 및 세법상 유형자산 관련 비용

연 도	기업회계 (A)	법인세법 (B)	차이 (A-B)
2009	451,000,000	451,000,000	0
2010*2	347,599,000	292,699,000	54,900,000
2011	Δ98,599,000	160,691,751	Δ259,290,751
2012*3	250,000,000	88,219,771	161,780,229
2013	150,000,000	107,389,478	42,610,522
합 계	1,100,000,000	1,100,000,000	0

*2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 100,000,000원 포함

*3 손상차손 인식 금액 100,000,000원 포함

- 상기의 세무조정을 통해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나, 법인세법의 개정이 없이 총 11억원의 비용이 회사 A가 신고한 5년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과세 소득에서 공제 되고, 이는 기업회계상 인식한 비용과 동일하다.

(4) 법인세회계

- 위 (3)에서 분석한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차이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반영함			
- 2009년 법인세회계 없음			
- 2010년 법인세회계			
(차) 이연법인세자산	12,078,000	(대) 법인세비용	12,078,000
- 2011년 법인세회계			
(차) 이연법인세부채	44,965,965	(대) 이연법인세자산	12,078,000
		(대) 법인세비용	32,887,965
- 2012년 법인세회계			
(차) 법인세비용	35,591,650	(대) 이연법인세부채	35,591,650
- 2013년 법인세회계			
(차) 법인세비용	9,374,315	(대) 이연법인세부채	9,374,315

<표 13>은 <사례 2>를 이용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하는 경우 회사 A가 수행할 세무조정과 법인세 회계를 분석했다. 세무조정 측면에 있어, 기업회계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세무회계상 상각범위액을 전액 손금산입함으로써 차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했던 <표 10, 11, 12>에 비해 간단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표 10, 11, 12>와 달리 회계기준 변경이나 세법 개정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 없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사례 분석 결과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기존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 이원화와 관련된 논의는 많았으나, 실무적으로 두 가지 장부를 작성하는 어려움과 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현행의 일원화된 장부 시스템 하에서도 기업회계상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과 세무회계상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이 별도 관리되어야 정확한 세무조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미 두 가지의 장부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황이다. 따라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국한해 장부를 이원화하는 경우 실무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회계기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산출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낮아지고 효율적인 장부 관리가 가능해진다.

V. 결 론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해 2011년부터 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회계실무에 있어서 큰 변동이 발생했다. 회계기준의 당기순손익으로부터 출발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으로 통해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회계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이 복잡해지고,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누적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세무조정 사항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기업이 결산 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만 세무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대다수 기업이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세법이 허용하는 경우 세무신고 목적에 맞추어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해왔다. IFRS의 도입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과세 및 세무조정의 부담이 증가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행 세무조정 체계가 변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특례규정은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IFRS를 각각 적용해 작성한 2010년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형자산에서 유의한 변동이 있었음을 밝혔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 이원화가 되어 있는 미국의 감가상각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기업에 발생하는 과세와 세무조정 부담을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례를 구성해 분석함으로써 재무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현행 세무조정제도와 결산조정제도가 회계기준의 변경에 취약한 문제점을 밝혔다.

동일 시점의 재무제표에 두 가지 회계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을 이용해 회계기준의 변동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세무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세무시스템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과도한 세무조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부 이원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두 가지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비용을 고려한다면 부분적으로 항목을 선별해 장부 이원화를 도입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국한해 장부를 이원화할 때,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낮아질 뿐 아니라 회계기준의 변동과 무관하게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과세소득 산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규명했다.

참고문헌

- 구자은. 2013.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 회계저널 제22권 제2호 : 145-168.
- 김기영 · 박희우. 2007. “감가상각회계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1호 : 9-26.
- 김상기 · 김태동 · 김성환 · 오윤숙. 2010. “감가상각방법과 상각기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 45-66.
- 김문철 · 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155-185.
- 김영철 · 김우영 · 고종권. 2011.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성장성”.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107-140.
- 김진수 · 정희선 · 조진권. 2009.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박재환 · 정도진. 200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 293-314.
- 심태섭 · 구자은 · 최기호. 2012. “국제회계기준시대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 분리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 309-341.
- 심태섭. 2011. “IFRS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 45-87.
- 이만우. 2013.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및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3호 : 253-277.
- 이영한. 200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3권 제3호 : 189-228.
- 이영한 · 최원석. 2009.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 9-36.
- 이정미 · 김태경 · 김정호. 2011. 「미국 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 이진영 · 이중현. 2010.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개선안 연구”.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제2호 : 213-237.
- 이화득 · 박선희. 201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감가상각방법 선택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41-170.
- 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 조용언 · 이정란. 2009.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 27-74.
- 최보람 · 최기호. 2011. “K-IFRS 적용에 따른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사례”.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423-444.
- Atwood, T., Drake, M., and Myers, L. 2010. Book-tax conformity, earnings persistenc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and cash flow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11–125.

Chan, H., Kenny, Z., and Tang, F. 2013. Tax effects of book–tax conformity,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and firm siz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12 : 1–25.

Internal Revenue Service. 2012. Publication 946.

Implementing Separate Depreciation Systems for Book and Tax Purposes

Manwoo Lee^{*} · Jeong-Sun Kim^{**} · Jun-Yong Shim^{***}

〈Abstract〉

IFRS has brought a prominent effect to corporate taxation.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tax adjustment is necessary for the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from the accounting net income. However, the emphasis on the fair value under IFRS seriously challenges this procedure and made the income tax allocation more complicated.

Depreciation for tangible assets excluding depreciable realty that requires straight-line method is one of many practices where IFRS requires a change. Under K-GAAP, most firms applied declining-balance method for the depreciation of such assets because the tax deduction is permitted only when it is also recognized as a cost on the financial statement. However, IFRS precludes the use of declining-balance method in order to properly match the cost of an asset against revenue.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asset value of 596 firms under K-GAAP and IFRS as prepared within their 2010 financial statements. We find that switching to IF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sset value of 527, or 88% of the sample firms.

This study demonstrates one of many immediate tax implications of IFRS by conducting several case analyses. Specific to the depreciation method, we show that IFRS creates a greater tax burden and a more complicated environment for income tax allocation. This is largely due to the gap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resulting from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change in depreciation method. Our findings also imply that the 2010 Tax Amendment does not fully eliminate the additional tax burden arising from the change in depreciation method after the adoption of IFRS.

This study further shows that the special provision for immediate write-offs enhances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tax adjustment process regardless of the IFRS adoption. Final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tax burden can be reduced with the use of two-book system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depreci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implementing separate depreciation systems for book and tax purposes in order to mitigate the corporate tax burden.

〈Key words〉 depreciation, two-book system, income tax accounting,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leemm@korea.ac.kr, 02-3290-1927

** Ph. D Studen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kjsun@korea.ac.kr, 010-2596-9838

*** Ph. D Studen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simjunyong@korea.ac.kr, 010-7799-9911